



2016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2016. 7. 12.

서울특별시 중구
(행정관리국)

2016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

〈회의개요〉

의안번호	2016-4			
일시 및 장소	○ 일 시 : 2016년 7월 12일 (화요일) 16:00 ○ 장 소 : 구청 지하1층 통합안전센터 내 회의실			
참석위원	○ 위 원 장 : 행정관리국장 ○ 내부위원 : 민원여권과장, 총무과장, 기획예산과장 ○ 외부위원 : 임규철, 주창범, 김지혜			
회의 진행순서	1. 개회선언 2.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소개 3.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방법 설명 및 심의 4. 폐회선언			
상정안건	연번	의안번호	상정부서	심의안건
	1	2016-4	시장경제과	「○○○○○ 시장관리자 및 관리단 지정 관련 서류」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
심의결과	연번	의안번호	의결내용	
	1	2016-4	부분인용 (부분공개) ○ 시장관리자 지정서 및 신청서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개인의 주소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○ 주주총회 회의록, 이사회 의사록, 회사 정관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의 경영·영업상의 비밀로 비공개 ○ 시장관리 운영계획은 상인들의 의무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공개	

〈발언요지〉

□ 간사

지금부터 「2016년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」를 시작하겠습니다.

- 오늘 심의할 안건은 시장경제과에서 상정한 「○○○○○ 시장관리자 및 관리단 지정 관련 서류」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임
- 심의위원 모두가 참석하신 관계로 심의를 진행하겠음

□ 위원장

지금부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땅땅땅 - (의사봉)

- 먼저 처리부서에서 상정안건의 취지 및 결정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람.

□ 처리부서

- 청구인은 ○○○○○ 내에서 상인회를 운영하는 자임. ○○○○○ 시장관리자 지정서 및 지정근거 서류 일체(최초, 현재) 공개 및 ○○○○○ 관리 규약, 관리단 지정 서류에 대한 공개를 주장하며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함
- ○○○○○ 시장관리자 지정서 일체(최초, 현재)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보이고, 지정서의 성명, 주민번호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
- ○○○○○ 시장관리자 지정근거 서류일체(최초, 현재)는 시장관리자 지정 신청서 내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개인주소 부분, 주주총회 회의록의 개인성명과 개인별 의사결정내역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됨.
- 주주총회 회의록, 회사 정관, 시장관리 운영계획은 상법상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및 법인경영 정보로 회사 사업 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
- ○○○○○ 관리 규약 및 관리단 지정 서류는 2016. 6. 27. 주택과에서 정보부존재를 통보하였고, ○○○○○ 관리규약은 시장관리자 신고시 제출 서류가 아님에 따라 정보 부존재함.

-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임.

위원장

-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○○○ **위원**

-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음
- 최초지정서 및 지정근거 서류 이것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나요?

처리부서

- 지정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면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.

○○○ **위원**

- 대표자 성명은 공개가 가능함

○○○ **위원**

- 상인회에서 관리비를 수납하는 관리자를 알고 싶다는 것인데 성명까지 비공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

○○○ **위원**

- 주민번호만 가리고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봄

○○○ **위원**

- 나머지 근거서류를 공개하는데 문제가 있나요?

처리부서

- 지정신청서는 민원신청서임. 개인정보 및 회사정보가 포함되어 있음.

○○○○ **위원**

- 어디에 있습니까? 지정신청서도 개인정보만 빼면 공개가 가능함
- 그럼 밑에 있는 구비서류가 문제가 되나요?

처리부서

- 주주총회 회의록은 개인별 의사결정 및 주주총회에 관련된 사항임. 행정관청과는 무관한 제3자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의사결정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됨.

○○○○ **위원**

- 그럼 이것과 이사회 의사록도 비공개로 함

처리부서

- 회사 정관은 전통시장과는 무관한 주주들의 권리 및 선출에 관한 사항임. 회사 내부 정보임.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됨.

○○○○ **위원**

- 정관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한가요?

○○○○ **위원**

- 상장과 비상장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.

처리부서

- 다음으로 ○○○○○○ 관리 운영 계획은 ○○○○○○에서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사안들을 저희 관청에 제출한 계획서임.

○○○○ **위원**

- 이것은 공개 해주어야 할 것 같음.

□ ○○○ **위원**

- 자료를 보시면 시장관리 운영계획은 ○○○○○와 입주상인 서로가 신뢰와 투명성을 가지고 라고 적혀 있는데 공개해주어야 할 것 같음

□ ○○○ **위원**

- 중구청에서 생산한 문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취득한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음.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서 생산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확인해 보길 바람
-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법인일 경우 정관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.

□ **처리부서**

- 비상장 주식회사임

□ ○○○ **위원**

- 비상장 법인이면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함
- 지정서하고 관리운영계획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. 단지, 지정서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지워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는 있음.
- 회의록하고 정관은 공개하지 않아도 됨.

□ ○○○ **위원**

- ○○○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뿐만 아니라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대상이 됨.

□ **위원장**

- 처리부서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○○○○○와 상인회 쉽게 말하면 점포주하고 입주자 단계로 보고 공개해줄 것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주는 것이 바람직함.
- ○○○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,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주시길 바람

○○○ 위원

- 찬성함.
- 시장관리 운영계획은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사항임. 영업과 관련된 비밀은 없음. 공개하는 것이 맞음
- 지정서하고 지정신청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
- 정관은 비상장법인이기 때문에 비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함

○○○ 위원

- 동의함.

○○○ 위원

- 지정서하고 지정신청서는 개인정보를 가리고 나갈 수 있는 사항임
- 시장관리 운영계획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함

○○○ 위원

- 동의함

○○○ 위원

- 전체적으로 동의함
- 한 가지 말씀드리면, 지정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주소도 가리고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

위원장

- 마지막에 말씀하신 시장관리 운영계획은 상인들의 의무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함
- 시장관리자 지정서하고 신청서는 주민등록번호 하고 개인의 주소를 제외하고 부분 공개하는 것으로 함
- 주주총회 회의록, 이사회 의사록, 회사 정관은 법인의 경영상의 비밀로 비공개 하는 것으로 함
- 더 이상 의견 있습니까?

□ **위원장**

-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심의위원 7명 참석 중 7명이 부분인용 결정함에 따라 부분인용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땡땡땡 - (의사봉)